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01호, 2020. 2. 11. 공포, 2020. 8. 1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이행 절차(안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지침 마련 및 통보, 계획 수립 및 확정, 이행상황 점검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

나. 균형성장촉진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5조제2호)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계획안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안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성기업, 여성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이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계

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리고 협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제2호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의 수립)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말까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u>	제3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u> ② <u>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계획안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③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안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u> ④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성기업, 여성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이를 계획에</u>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u>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u> 3. ~ 7. (생략)	반영할 수 있다. ⑤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⑥ <u>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리고 협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u> 제5조(위원회의 기능) ----- -----. 1. (현행과 같음) 2. <u>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u> 3. ~ 7.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정 책 총 괄 과	
연 락 처	042-481-4363